

1 회계의 기초

① 회계의 목적

회계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기업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회계의 구분

(1) 회계정보의 이용자

1. 내부정보이용자 : 경영자
2. 외부정보이용자 : **주주, 채권자**, 정부, 대중 등

(2)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구분	재무회계	관리회계
제공의 대상	외부정보이용자	내부정보이용자
작성의 기준	객관적인 회계기준	경제학, 경제학, 통계학 등..
제공의 시기	일년, 반년, 분기 등 정기적 보고	수시로 보고
제공의 양식	재무제표(F/S)	일정한 형식 없음
제공되는 정보	과거정보	미래정보

(3)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PP)
 - : 그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학습(상장기업, 금융기관 등은 의무적용. 단,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특징

㉠ 원칙중심

- ㉡ 기본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경제적 실질 우선**)
- ㉢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
- ㉣ 재무상태표 중심
- ㉤ 각국의 협업을 통해 제정, 주식공시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음

3. 회계감사

- ㉠ 공인회계사가 수행, 재무제표가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외부의 제3자가 검토하는 것
- ㉡ 모든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 회계감사가 투자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③ 재무제표 ☆ <- 재무제표는 기준에 따라 작성. 그 밖의 보고서는 기준준수 X

1. **재무상태표** : **일정시점**, 자산(경제적자원), 부채(채권자청구권), 자본(주주청구권-) 부채 보다 후순위 청구권의 잔액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2. **포괄손익계산서(재무성과)** : **일정기간**, 수익, 비용 및 이익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3. **현금흐름표** : **일정기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는 재무제표, 현금주의 영업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
4. **자본변동표** : **일정기간**, 재무성과 이외의 자본변화를 보여주는 재무제표
5. **주석** : 기준의 준수사실,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 및 설명

2 개념체계

① 개념체계 목적 및 우선순위

(1) 목적 : 도움을 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개정하거나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정책을 개발하거나 모든 이해관계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우선순위

① 개념체계는 기준서가 아니다.

②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않는다.**

③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기준서가 자동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1) 주요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 경영자 X, 일반대중 X, 정부 X

(2)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 주요이용자 의사결정시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재무상태표) : 재무적 강약점,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재무성과(포괄손익계산서) :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이해하는 데 도움

㉣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과 같은 그 밖의 사건(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4) 일반목적재무보고의 한계 ☆

①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②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③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④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③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I. 근본적 질적특성 : 목적적합성, 표현충실성

II. 보강적 질적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하나,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는 집단적으로는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음

(1) 목적적합성

- 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② 예측가치, 확인가치(피드백가치) 또는 이 두가지 모두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음
- ③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
- ④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음
- ⑤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 O

☞ 중요성(목적적합성의 하부속성)

- ㉠ 중요성은 개별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
-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해당 정보는 중요한 것임
- ㉢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없음

(2) 표현충실성

- ①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함
- ② 완전한 서술이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
- ③ 독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말함. 독립성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되는데,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함.
- ④ 독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 않음
- ⑤ 오류가 없는 서술이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술의 모든 면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⑥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예: 정부보조금)

[보강적 질적특성]**(1) 비교가능성**

- ①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
- ②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모두 포함
- ③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④ 일관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음.
비교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줌 ★
- ⑤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 감소

(2) 검증가능성

- ①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의에 도달할 수 있음)
- ②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서 단일 점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3) 적시성(예: 중간재무보고)

- 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
-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지지만 일부 정보는 추세 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음

(4) 이해가능성

- ①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이해가능해야 하며,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지으며, 표시하면 이해가능하게 됨
- ② 이해가능성은 아무런 사전 지식조차 없는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질적 특성이 아님.
즉,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④ 계속기업가정, 보고기업**(1) 계속기업가정**

- ①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
- ②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다면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

(2) 보고기업

- ①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
- ②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음
- ③ **보고기업이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 ④ 보고기업의 종류

- ㉠ **연결재무제표**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합친 경제적 단일 실체
- ㉡ **비연결재무제표** :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 ㉢ **결합재무제표** : 보고기업이 지배, 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의 실체들로 구성

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1) 자산의 정의**

-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 ② 자산은 경제적자원 자체이지 경제적자원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궁극적인 유입이 아님
- ③ 기업의 모든 권리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함
- ④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예: 자기주식)**
- ⑤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 각각은 별도의 자산이나, 회계목적상 여러 개의 권리를 단일 자산이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음
- 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할 필요는 없음.

- ⑦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하면 자산이 될 수 있음
- ⑧ 자산의 취득은 지출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지출의 발생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자산으로 정의 될 수 있음(예: 증여받은 재화)

(2) 부채의 정의

-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 ②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함(법적의무, 의제의무 모두 포함)
- ③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님
- ④ 경제적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
- 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으로 경제적효익을 얻게 되거나 조치를 취한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에만 현재의무 발생
-> 법률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님!
- ⑥ 부채는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하나 다른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음 ★

(3) 자본의 정의

- ①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순자산, 소유주지분, 주주지분)
- ② 자본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에 대한 청구권(후순위 청구권)

(4) 수익의 정의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

(5) 비용의 정의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

⑥ 인식 및 제거

(1) 인식

- ① 재무제표 요소 중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 포착하는 과정
- ②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과 부채 인식

(2) 제거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

⑦ 측정

I. 역사적원가

II. 현행가치 :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행원가

(1) 역사적원가(유입가치)

- ① 자산 : 취득 또는 창출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지급한 대가 + 거래원가**)
- ② 부채 :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가치(**수취한 대가 - 거래원가**)
- ③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
- ④ 자산의 손상이나 부채의 손실부담이 아니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예: 감가상각, 상각, 상각후원가)

(2) 공정가치(유출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 ①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관측되기도 하고,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되기도 함
- ②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지 않음 (**취득시 거래원가 X**)
- ③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음 (**처분시 거래원가 X**)

(3) 사용가치(자산), 이행가치(부채) : 유출가치

- ① **사용가치(자산)** :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
- ② **이행가치(부채)** :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
- ③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으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 ★ (취득 X, 처분 O)**
- ④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
- ⑤ 사용가치(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되지 않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을 통해 측정한다.

(4) 현행원가(유입가치)

- ① 자산 :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포함
- ② 부채 :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차감

⑧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정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유출가격)

- ① 가격 결정시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예: 자산의 상태와 위치, 제약요인 등)을 고려
- ② 공정가치 측정은 정상거래가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주된 시장이 없으면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치는 주된 시장의 가격으로 함
- ③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서 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으나 운송원가는 조정함 ★**

(2) 공정가치 평가기법

- ①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및 이익접근법 중 단일 또는 복수의 방법 사용
- ②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
- ③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으로서 크기를 반영하는 할인이나 할증은 공정가치 측정시 허용되지 않음

(3)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 ①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 고려
- ② 최고 최선의 사용은 기업이 다르게 사용할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결정

⑨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

(1) 재무자본 : 명목화폐단위, 불변화폐(구매력)단위

- ① 해당기간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익 발생
- ② 명목화폐단위 또는 불변구매력단위로 측정 가능
- ③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음**
- ④ 명목화폐자본으로 이익 측정 시 보유자산의 가격 증가, 즉 보유이익도 개념적으로 이익에 포함.
- ⑤ 불변구매력 단위로 측정할 경우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부분만 이익으로 간주되며, 그 이외의 가격 증가부분은 자본유지조정(자본)으로 처리

(2) 실물자본

- ① 해당기간동안 소유주에게 배분하거나 소유주가 출연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업의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 발생
- ②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 ★**
- ③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유지조정(자본)으로 처리

3 재무제표 표시

①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원칙

(1) 공정한 표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기재할 수 없다.
- ③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계속기업

- ① 경영진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3) 발생기준회계 :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중요성과 통합표시

- ① 유사한 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중요하면 구분표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표시한다.
- ②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표시한다.
- ③ 본문과 주석의 중요성 판단은 다를 수 있다.

(5) 상계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는다.**
- ② 단, 동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 비용의 상계표시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거래의 결과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 ㉠ 투자자산 및 영업용자산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금에서 그 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처분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 ㉡ 충당부채와 관련된 지출을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보전 받는 경우, 당해 지출과 보전 받는 금액
- ㉢ **외환손익 또는 단기매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사한 거래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6) 보고빈도 : 전체 재무제표(비교정보 포함)는 적어도 1년 마다 작성. 52주 보고관행도 인정 ○

(7) 비교정보

- ① 모든 금액에 대한 정보 :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 ② 서술형 정보 : 목적적합한 경우 전기 비교정보를 포함

(8)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 ①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3) 차입금 등의 분류 : 보고기간 말 상황으로 판단

수정이 안되는 보고기간후사건(주석공시)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①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③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는 경우
②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	④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㉓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 = ㉑ 당기순손익 ± ㉒ 기타포괄손익

(1) 당기순손익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당기수익에서 당기비용을 차감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급여, 감가상각비, 임차료, 광고선전비 등)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4.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기 중 발생한 수익, 비용은 당기수익, 당기비용임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도록 요구.(본문 또는 주석)
- ③ 조정영업손익의 표시 : 본문 X, 주석 O
- ④ 특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및 주석 어디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본문 X, 주석 X)

(2) 당기손익과 관련된 비용의 분류방법 : 성격별 또는 기능별 중 선택

성격별(원천별)	기능별(역할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용이 간편(기능별로 재배분 X) ②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더 유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원가법(적어도 매출원가는 구분하여 표시) ② 목적적합한 정보제공 ③ 단, 비용 배분에 담당자의 자의적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 ④ 기능별 선택시 성격별 추가공시

(3) 기타포괄손익 : 손익은 맞는데 당기손익은 아닌 것

-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의 허용, 금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 ② 기타포괄손익의 표시 :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선택)
 - ㉑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
 - ㉒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 반영 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각 항목들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일 금액으로 합산하여 표시

당기손익 재분류 X	당기손익 재분류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 시 인식하는 재평가잉여금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지분상품) ㉣ FVPL 지정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평가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를 경우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평가손익 ㉢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4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1) 매입원가

- ① 매입가격,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
- ②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차감

(2) 기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

(3)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 별도 비용처리

- ㉠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 ㉢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
- ㉣ 판매원가(예: 판매운임)

②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원가흐름가정)

(1) 개별법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 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영역의 원가 결정에 사용

(2) 선입선출법

- ① 먼저 매입(생산)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며 최근에 매입(생산)한 재고자산은 기말재고로 남는다고 가정
- ②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속기록법 및 실지재고조사법의 매출원가, 기말재고금액은 동일**

(3) 가중평균법

- ① 계속기록법 + 가중평균법 : 이동평균법(매입시마다 평균)
- ② 실지재고조사법 + 가중평균법 : 총평균법(결산시 평균)

(4) 원가흐름가정의 당기순이익 효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 ①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②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③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5) 기타 고려사항

- ① 단위원가 결정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음
- ② 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 적용
- ③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㉓ 저가법

(1) 기말재고금액 = \min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2) 순실현가능가치

- ① **상품, 제품, 재공품 = 순실현가능가치(예상판매가 - 예상판매비용 - 추가가공원가)**
- ② **원재료 = 현행대체원가**

(3) 보유목적에 고려한 저가법

- ① 확정판매계약 순실현가능가치 : 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추정
- ②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 :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추정
- ③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원재료 및 기타소모품은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음(감액하지 않음) ★**
- ④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현행대체원가)로 감액 ★**

(4) 저가법의 적용

- ① 항목별 적용이 원칙
- ②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들을 통합하여 적용 가능(조별 가능, 총계 불가)

㉔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1) 감모손실(수량부족)

- ① 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사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② 모든 감모손실(정상감모손실 + 비정상감모손실)은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2) 평가손실(단위당 원가의 하락)

- ① 평가손실 = 실사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min (단위당 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② 모든 평가손실은 감액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3)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원가 계산

예: 기초재고(W100,000) + 당기매입(W900,000) = 매출원가(비용) + 기말재고(자산)

㉠ 장부재고금액 = W200,000 ㉡ 실사재고금액 = W150,000 ㉢ 저가재고금액 = W100,000

=> 저가재고금액을 기말재고금액으로 결정하면 매출원가에는 진정한 매출원가(판매로 인한 재고자산 감소분) + 감모손실(정상감모손실 + 비정상감모손실) + 평가손실이 모두 포함됨

⑤ 재고자산의 추정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 가능

(1)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매가환원법) : 기준서 인정 O

- ① 이익률이 유사하고 다품종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편의상 사용할 수 있음
- ② 기말재고금액(원가) = 기말재고금액(매가) × 원가율
 - ㉠ 평균주의 원가율 : 기초재고, 당기매입 모두 포함
 - ㉡ 선입선출 원가율 : 당기매입만 포함(기초재고는 포함 x)
 - ㉢ 저가주의 : ㉠, ㉡의 원가율 분모에서 순인하를 차감하지 않음
- ③ 매출원가 = 기초재고(원가) + 당기매입(원가) - 기말재고(원가)

(2) 매출총이익률법 : 기준서 인정 X

- ① 도난, 재해 등으로 기말재고금액을 구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
- ② 기말재고(추정)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추정)
- ③ 매출원가(추정)
 - ㉠ 매출원가 = 매출액 × (1 - 매출총이익률)
 - ㉡ 매출원가 = 매출액 × 1/(1 + 원가가산이익률)
- ④ 재해손실 = 기말재고(추정) - 소실시점의 재고가치, 미착품

⑥ 활동성비율

- ①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 ②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 ③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 ④ 재고자산회수기간 = 365일 ÷ 재고자산회전율
- ⑤ 정상영업주기 = ② + ④

5 생물자산

① 농림어업 : 농림어업을 수행하는 자산 = 생물자산

농림어업활동의 공통적 특성은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변화의 관리 및 변화의 측정이므로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예:원양어업, 천연림 벌채등)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음

② 생물자산

(1) 생물자산의 최초측정 : 순공정가치(공정가치 - 매각부대원가)

① 외부구입 :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

순공정가치 산정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 최초 인식시점에서 평가손실 발생 가능

② 생물자산에서 새롭게 창출한 생물자산(기존의 생물자산이 어린 병아리, 젖소 등을 출산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하며 바로 평가이익(당기손익)이 발생

(2) 생물자산의 후속측정

① 매 보고기간 말 순공정가치로 평가 : 당기손익

② 순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

③ 수확물

① 수확물은 항상 순공정가치로 측정

② 수확물은 수확시점에서만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 금액이 재고자산 등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됨

③ 수확물을 순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

④ 정부보조금

①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

6 유형자산

① 유형자산의 인식요건(모두충족)

-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유형자산의 최초 측정 : 원가

(1) 원가에 포함

- ①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은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②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 유형자산 매입,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 ㉡ 설치장소 준비 원가
 - ㉢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 ㉣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 ㉤ 유형자산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시운전비)
 - ※ 시제품의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관련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 ㉥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③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2) 원가에 포함 X

-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②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③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④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⑤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원가
 - ㉠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 ㉡ 초기 가동손실
 - ㉢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3) 추가 고려사항

1. 장기할부취득

- ①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취득원가 = 현금가격상당액
- ② 현금가격상당액(즉, 현재가치)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

2. 일괄취득시

일괄취득(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자산 취득)은 취득일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

3.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철거시

- ①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직후 건물 철거시 토지만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 ② **건물 철거비용(즉시철거비)은 토지 취득원가에 가산**
- ③ 즉시철거시 고철매각대 : 토지 취득원가에서 차감

4. 교환취득

-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중 더 명백한 공정가치**
 -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수수액
 -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 ㉣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수수액

5.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취득**1) 정부보조금의 인식요건**

- ① 다음의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인식
 - ㉠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 ㉡ 보조금의 수취
- ② 정부보조금의 수취방법은 회계처리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보조금을 일시에 수령하든 나누어 수령하든 회계 처리는 동일하다는 의미)
- ③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당해 기업이 대출의 상환면제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
- ④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정부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

2)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 ①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수익 · 비용의 대응)
- ②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③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

3) 자산관련 보조금

- ①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 모두 가능(**자산차감법 또는 이연수익법 중 선택**)
- ② 이연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 ③ **자산차감법의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킴**

4) 수익관련 보조금 : 자산관련보조금 외의 보조금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과 같이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음

5) 정부보조금의 상황

상황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6. 복구의무 있는 취득**1) 복구의무 있는 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 + 복구예상금액의 현재가치**

- ① 후속측정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복구충당부채 전입액)
- ② 복구의무 종료시 복구공사손익(당기손익) : 복구충당부채 < 실제 복구시 소요된 금액 => 복구공사손실
복구충당부채 > 실제 복구시 소요된 금액 => 복구공사이익

2) 사용기간 중 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장부금액 + 복구예상금액의 현재가치

: 복구충당부채를 장부금액에 가산한 뒤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용

③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

- ①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
- ② 재평가모형의 최초 적용시 회계정책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적용연도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하여 전진법 적용
- ③ 재평가모형 최초 적용 이외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소급적용

④ 감가상각**(1)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 ①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분이 **유의적이라면**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
- ②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음**

(2) 감가상각의 개시, 중지

- ① 감가상각의 개시 :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 ② 감가상각의 중지 :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감가상각 중지
- ③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희상태가 되더라도 계속하여 감가상각액을 인식 ★**

(3) 회계추정치의 변경

- 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 ② 잔존가치는 장부금액과 크거나 같을 수 있다. 단,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속 감가상각액을 인식한다. ★**
- ③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 ④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사용 가능.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

⑤ 재평가모형

(1) 재평가모형의 적용

- ① 재평가모형의 최초 적용시 회계정책변경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 적용연도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수정하여 전진법 적용
- ②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수행하되, 재평가의 빈도는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짐
- ③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므로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 단,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음

(2)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 ①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되, 동일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을 당기손익 인식
- ②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③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하며,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재평가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가능
- ④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는 허용하지 않는다.

⑥ 손상

(1) 원가모형의 손상

1.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
2.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이 발생 ○

- ①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② 손상차손(당기비용)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③ 손상차손환입(당기수익) = MIN[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장부금액,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2) 재평가모형의 손상

1. 재평가 후 공정가치 < 회수가능액 :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
2. 재평가 후 공정가치 > 회수가능액 : 손상이 발생 ○

- ① 감가상각 → 공정가치로 재평가 → 회수가능액까지 감액
- ②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을 우선 적용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
이 때 이미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를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이 있으면 손상차손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⑦ 유형자산의 처분

1. 처분금액(순매각금액) > 장부금액(감가상각 완료 후) = 유형자산처분이익(당기손익 +)
2. 처분금액(순매각금액) < 장부금액(감가상각 완료 후) = 유형자산처분손실(당기손익 -)

7 차입원가 자본화

①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 ① 재고자산,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포함
- ②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재고자산 제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 제외
- ③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제외

② 자본화 개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는 물리적 제작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예: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포함

③ 자본화 중단 및 종료

- ① 자본화 중단 :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 중단
(단,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거나 일시적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음)
- ② 자본화 종료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종료

④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1)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

(2) 특정목적차입금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

(3) 일반목적차입금 : 일반목적차입금 중 적격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차입금

- ①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금액 =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의 연평균지출액] X 자본화이자율
- ②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
= 해당 회계연도의 실제이자비용/해당 회계연도의 일반차입금 연평균차입금액
- ③ 일반목적차입금 자본화의 한도 :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음

(4) 연평균지출액 = 지출액 X (해당 회계연도의 지출기간/12)

예: 20X1년 7월 1일 ₩100,000 지출시 20X1년도 연평균지출액은?

=> 연평균지출액 = ₩100,000 X 6/12 = ₩50,000

- ① 연평균지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입원가의 발생과 관련된 지출액만 포함
- ② 적격자산 건설을 위해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연평균지출액에서 차감
- ③ 자본화기간이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전기 이전에 지출한 금액은 지출시점에 관계없이 기초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

8 무형자산

① 무형자산 정의를 위한 요건(모두충족)

- ① 식별가능성
- ② 자원에 대한 통제
- ③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

② 무형자산 인식요건(모두충족)

-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의 최초측정

(1) 원칙 : 원가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예외)

- 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
- ②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 자산으로 인식

(3)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①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연구비)으로 인식
- ②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 ③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은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
-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한다.
- ⑥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④ 연구활동, 개발활동

(1) 연구활동

- 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②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③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
-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2) 개발활동

- ①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②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③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④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⑤ 무형자산의 상각**(1) 내용연수****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①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봄
- ②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상각하지 않고, 매년 또는 손상의 징후가 있을때마다 손상차손을 검토**
- ③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에 대한 정당화 여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
- ④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으로 변경할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2) 내용연수가 유한(한정)한 무형자산

- ①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
- ②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음

(2) 상각방법 및 회계추정치의 변경

- ①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하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 ② 잔존가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0"으로 봄
 - ㉠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
 - ㉡ 활성시장이 있고,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③ 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들의 변동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전진적용
- ④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장부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음. 단,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할 때까지 상각비는 인식하지 않음.

9 투자부동산

① 투자부동산의 예 : 투자부동산 O

-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 ②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 ③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또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사용권자산)
-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 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② 투자부동산이 아닌 사례 : 투자부동산 X

-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 ② 자가사용부동산(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
- ③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③ 기타 고려사항

- ① 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단, 분리매각할 수 없다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 ②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비중이 경미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
- ③ 지배기업이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당해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나, 연결재무제표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분류

④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 및 후속측정

(1) 투자부동산의 최초 측정

투자부동산은 **원가**로 최초 측정한다. 원가에는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2) 투자부동산의 후속측정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한다.

⑤ 공정가치모형

- ①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모형 적용
- ② **공정가치모형 적용시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상각자산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음**

⑥ 투자부동산 계정대체**(1) 투자부동산(원가) -> 재고자산, 유형자산(원가)**

계정대체 전 장부금액을 승계하므로 대체과정에서 손익은 발생하지 않음

(2)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 재고자산, 유형자산

계정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과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투자부동산평가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

(3) 유형자산(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① 대체 전까지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

② 계정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과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재평가회계처리**를 수행

(재평가회계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공정가치 > 장부금액인 경우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손익 인식

단, 공정가치 < 장부금액인 경우 차액은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없는 경우 재평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

(4)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계정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과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5) 건설중인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

①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원가) -> 투자부동산(원가) :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 승계

②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원가) -> 투자부동산(공정가치모형) : 계정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과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10 금융상품**①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② 금융상품의 종류**(1) 금융자산**

- ① 현금
-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주식 등
- ③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은행예치금, 투자사채, 대여금, 수취채권 등
 -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 ④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2) 금융부채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매입채무, 차입금, 사채 등
 - ㉡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 ②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3)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

③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①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니므로 당기법인세부채는 비금융부채임
- ②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는 의제 의무는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비금융부채임
- ③ 선금금이나 선수금은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 및 의무가 아니므로 비금융상품임

11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① 현금

통화(외화포함),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구분	사례
통화	지폐, 주화, 외화, 지점전도금 포함
통화대용증권	타인발행수표, 송금환, 우편환, 만기도래 현금배당권, 만기도래 사채이자표, 만기도래어음, 일람출급어음, 기타 통화와 즉시 교환가능한 증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기한의 개념이 없음. 그러나 사용제한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은 사용제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 가능

② 현금성자산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다.
- ②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 ③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예)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내에 도달하는 상환우선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달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CD),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을 가진 환매채(RP) 등..

(☞ 투자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서 3개월 내에 매도할 예정 : 현금성자산 X, FVPL 금융자산임)

③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① 차용증서(대여금 등으로 구분)
- ② 선일자수표(매출채권, 미수금 등으로 구분)
- ③ 수입인지·우표(소모품 등으로 구분), 부도수표, 부도어음
- ④ 당좌개설보증금, 당좌차월(단기차입금)
- 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타인발행약속어음

④ 은행계정조정표 :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와 은행의 잔액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작성

(1) 회사의 조정사항

- ① 가산조정 : 추심어음, 이자수익, 미통지입금
- ② 차감조정 : 부도수표, 부도어음, 이자비용
- ③ 오류 : ㉠ 출금오류(회사가 발행한~)인 경우 (-)부호를 붙여 수정금액을 찾아야 함
 ㉡ 입금오류(회사가 입금한~)인 경우 +부호를 붙여 수정금액을 찾아야 함

(2) 은행의 조정사항

- ① 가산조정 : 미기입예금(마감시간 후 입금)
- ② 차감조정 : 기발행미인출수표
- ③ 오류 : 은행의 오류가 출금오류인지 입금오류인지를 구분하고 ±부호에 유의

12 금융자산

① 금융자산의 분류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 ① 금융자산의 매도가 필수적인 사업모형이 아니라면 금융자산을 중도에 매각하더라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
- ② 단기매매목적도 아니고 조건부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도록 선택 가능.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추후 취소는 불가능
- ③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항목 중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 가능. 이러한 지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추후 취소는 불가능

② 투자기분상품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

① 취득시 거래원가 : 당기비용으로 인식

- ② 최초측정금액 :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 ③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증감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FVPL 금융자산 평가손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④ FVPL 금융자산 처분손익 : 당기손익
 - ㉠ 취득한 해에 처분 : 순매각금액 - 취득원가
 - ㉡ 취득한 이후 연도에 처분 : 순매각금액 - 장부금액(직전연도 말 공정가치)
- ⑤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 ㉠ 현금배당 : 배당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 ㉡ 주식배당(무상증자) : 투자자의 부가 증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음
(단, 주식수가 증가된 만큼 한주당 단가를 하락시키는 조정이 있음에 유의)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 금융자산(FVOCI 선택 금융자산)

※ 투자기분상품에 대한 FVOCI 금융자산으로의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① 취득시 거래원가 :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

- ② 최초측정금액 :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 취득시 거래원가
- ③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증감액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 ④ FVOCI 선택 금융자산 처분손익 :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처분손익은 없다.
 - ㉠ 처분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FVOCI 선택 금융자산 평가손익에 반영
 - ㉡ 처분손익 = 처분시점의 공정가치 - 처분시점의 장부금액 = W0
- ⑤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 ㉠ 현금배당 : 배당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 ㉡ 주식배당(무상증자) : 투자자의 부가 증대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음
(단, 주식수가 증가된 만큼 한주당 단가를 하락시키는 조정이 있음에 유의)

③ 투자채무상품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AC 금융자산) : 수취목적

① 취득시 거래원가 : 최초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가산

② 매 보고기간 말 후속측정 :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

※ AC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③ AC 금융자산 처분손익 : 당기손익

AC 금융자산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AC금융자산 처분이익(당기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 AC금융자산 처분손실(당기손익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 : 수취 + 매도

※ 투자지분상품의 FVOCI 선택 금융자산과 회계처리가 달라요! 주의!

① 취득시 거래원가 : 최초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가산

② 매 보고기간 말 후속측정 :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평가(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당기손익)은 AC금융자산과 동일

(☞ 이자수익은 투자채무상품의 현재가치된 금액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FVOCI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어도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것이 아님)

㉡ 공정가치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연도 말 공정가치 - 이자수익 반영 후 장부금액

③ FVOCI 금융자산 처분손익 : 당기손익

FVOCI 금융자산 처분손익 = AC 금융자산의 처분손익과 동일

(☞ 기준서는 동일한 투자채무상품을 취득하여 처분하는데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때의 처분손익(당기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유용한 회계처리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FVOCI 금융자산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AC 금융자산과 동일한 처분손익이 계상되도록 한다.)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 : 기타(주로 매도목적)

※ 이번에는 주식을 취득한게 아니라 채권을 취득한 것이네요. 주의! <— 저도 기업이 주식만 사든, 채권만 사든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ㅠ

① 취득시 거래원가 : 별도 당기비용으로 처리

② 매 보고기간 말 후속측정 : 이자수익(표시이자-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평가(당기손익)

㉠ 이자수익(당기손익) = 표시이자만

(☞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투자채무상품은 이자수익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FVPL의 보유목적상 보유기간이 짧고 잦은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며, 이자수익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것과 표시이자를 적용하는 방법 모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FVPL로 분류된 투자채무상품은 이자수익에 대해 표시이자로 인식한다. 표시이자만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결국 기초장부금액이 그대로 기말까지 유지된다는 것이니 뒤에 이어질 평가손익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다.)

㉡ 공정가치 평가손익(당기손익) = 연도 말 공정가치 - 기초 장부금액

③ FVPL 금융자산 처분손익 : 당기손익

FVPL 금융자산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직전연도말 공정가치) : FVPL금융자산 처분이익(당기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직전연도말 공정가치) : FVPL금융자산 처분손실(당기손익 -)

④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자산의 손상 적용대상 : 모든 금융자산이 손상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① 투자지분상품은 신용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투자채무상품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의 손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자산의 손상 적용대상 : AC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

(2) 기대신용손실모형

- ①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기대신용손실모형)
- ② 기대신용손실의 추정기간 ★
 -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 12개월**
 -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 등 : 전체기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환입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
- ④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 총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 신용이 손상 = 순장부금액(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순장부금액 X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13 금융부채

① 금융부채의 분류

- (1)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하는 금융부채 : 예) 사채
- (2) 그 밖의 방법으로 후속측정하는 금융부채
- (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지정

② 사채의 발행

(1) 사채의 발행금액 = 미래 현금흐름을 발행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사채발행비

☞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

- ㉠ 사채발행비가 없는 경우 : 시장이자율 = 유효이자율
- ㉡ **사채발행비가 있는 경우 : 유효이자율 > 시장이자율**

(2) 사채의 발행유형

- ㉠ 액면발행 :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액면이자율)
- ㉡ 할인발행 :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액면이자율)
- ㉢ 할증발행 : 시장이자율 < 표시이자율(액면이자율)

③ 사채의 후속측정 : 사채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회계처리만 수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① 장부금액 : 매기 증가	① 장부금액 : 매기 감소
② 이자비용 : 매기 증가	② 이자비용 : 매기 감소
③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매기 증가	③ 사채할증발행차금 상각액 : 매기 증가

- ㉠ 이자비용 = 사채의 **기초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 상각액 = 사채의 기초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표시이자

④ 사채의 조기상환(만기전 상환)

(1) 조기상환손익(사채상환손익) : 당기손익

상환금액 > 조기상환 시점의 장부금액 : 사채상환손실(당기손익 -)

상환금액 < 조기상환 시점의 장부금액 : 사채상환이익(당기손익 +)

(☞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곳은 사채를 발행한 곳이므로 부채를 더 적은 상환금액으로 변제했을 때 이익이 된다. 이에 반해, 사채를 투자한 투자자(금융자산)는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 처분손실이 발생하므로 발행자의 상환이익 = 투자자의 처분손실이 된다.)

☞ 은미쌤의 간단예제

사채를 발행한 기업 = (주)한국, 사채를 취득한 기업 = (주)민국

20X2년 초 (주)한국이 ₩1,000,000을 지급하고 사채를 조기상환하려고 한다. 20X2년 초 사채의 장부금액은 ₩950,000이다.

1) (주)한국은 조기상환손실이 발생

$$= ₩1,000,000(\text{상환금액}) - ₩950,000(\text{장부금액}) = (₩50,000) \text{ 손실}$$

2) (주)민국은 처분이익이 발생

$$= ₩1,000,000(\text{처분금액}) - ₩950,000(\text{장부금액}) = ₩50,000 \text{ 처분이익}$$

(2) 회계기간 중 조기상환하는 경우

※ 사채의 표시이자는 통상 매 보고기간 말에 1년치를 전액 지급한다. 단, 회계기간 중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기초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발생한 표시이자 상당액(경과이자)을 포함하여 상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손익

상환금액(경과이자 포함) > 조기상환 시점의 장부금액(경과이자 포함) : 사채상환손실(당기손익 -)

상환금액(경과이자 포함) < 조기상환 시점의 장부금액(경과이자 포함) : 사채상환이익(당기손익 +)

② 경과이자를 포함한 장부금액

$$= \text{기초장부금액} + \text{기초장부금액} \times \text{유효이자율} \times (\text{기초부터 상환시점까지의 기간}/12)$$

(3) 만기상환

① 만기상환시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액면금액으로 동일하다.

② 만기상환시 상환시점에 상환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14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① 총당부채 : 지급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추정채무 =>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인식

(1) 총당부채의 인식요건 : 모두충족

-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②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다**.
- ③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1) 현재의무

- ㉠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경우(50% 초과)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 ㉡ 어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현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나 추후에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입법 예고된 법규의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규안대로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한 때에만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

2) 의무발생사건

- ㉣ 의무발생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어야 한다.
- ㉤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는 총당부채 인식 대상이 아니다. ★**
- ㉥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 예)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비용 : 총당부채 인식
 - 예) 특정 환경 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지출 : 총당부채 인식 × (대수선, 보험미가입)

3)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 ㉦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는다.

(2) 총당부채의 측정 :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

1) 기댓값, 중간값

총당부채가 다수의 항목과 관련되는 경우 기댓값, 가능한 결과가 연속적인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각각의 발생확률이 동일할 경우 중간값을 사용한다.

2) 예상처분이익

총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총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3) 현재가치

-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 ㉩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4) 총당부채의 변동

- ㉠ 총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장부금액을 증가시키며, 증가금액은 차입원가(이자비용)로 인식한다.
- ㉡ 매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총당부채 잔액을 조정하고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관련 총당부채를 환입한다. (예: 제품보증총당부채를 설정하였는데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잔액을 다시 환입시킨다는 의미)

5) 연대의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 중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총당부채로 인식하고, 이행해야 할 전체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에 한하여 우발부채로 주식 공시**

6) 제3자 대리변제

- ㉠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자산 인식금액은 총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총당부채와 관련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과 상계하여 표시 가능 (단, 총당부채는 전체 의무금액임) ★**

7) 손실부담계약 : 원가 > 효익

- ㉠ 원가 = $\text{MIN}[\text{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원가, 보상금 또는 위약금}]$
- ㉡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총당부채로 인식**
- ㉢ 손실총당부채 설정 전 관련 자산에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

㉣ 우발부채 : 주식에 공시**(1) 우발부채**

- ㉠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그 존재 여부가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 ㉡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2) 우발부채의 지속적 재검토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이후 총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총당부채로 인식한다.

㉤ 우발자산 :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식공시

- ㉠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자산
- ㉡ 우발자산은 금액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식공시
- ㉢ 다만, 금액의 유입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

15 자본

① 자본의 분류

자본거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3. 자본조정 (-)항목 :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 (+)항목 : 미교부주식배당금
손익거래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타포괄손익) 5. 이익잉여금(당기손익의 누적합계)

② 자본금의 변화

증자 (자본금 증가)	① 실질적 증자(유상증자) : 자본금 ↑, 자본 ↑ ② 형식적 증자(무상증자, 주식배당) : 자본금 ↑, 자본 불변
감자 (자본금 감소)	① 실질적 감자(유상감자) : 자본금 ↓, 자본 ↓ ② 형식적 감자(무상감자) : 자본금 ↓, 자본 불변

③ 증자

(1) 유상증자 :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 모두 자본은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한 만큼)

- ① 액면발행 : 발행금액 = 액면금액
- ② 할증발행 : 발행금액 > 액면금액
- ③ 할인발행 : 발행금액 < 액면금액
- ※ 신주발행비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2) 무상증자, 주식배당

- ① 무상증자 : 자본금 증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감소, 자본 불변
- ② 주식배당 :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자본 불변

④ 자본이 불변하는 다양한 사례

구분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자본총계)	불변	불변	불변	불변
자본금	증가	증가	불변	불변
이익잉여금	감소	감소가능	불변	불변
자본잉여금	불변	감소가능	불변	불변
발행주식수	증가	증가	증가	감소
액면가액	불변	불변	감소	증가

⑤ 자기주식

※ 자기주식은 취득목적과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자본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기주식은 자본항목이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

- ① 취득원가로 자본에 (-) 표시한다.
- ② 자기주식의 취득시 (차) 자기주식(자본의 감소) (대) 현금(자산의 감소) 자본은 감소한다.

(2) 자기주식의 처분(재발행)

- ① 자기주식처분손익(손익거래 X, 자본거래 O) :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기주식처분 손익으로 기록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상계 후 잔액으로 표시한다.
- ② 자기주식 처분시 수령한 현금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3)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산, 부채의 변동이 없어 자본은 불변한다.

⑥ 이익잉여금**(1) 이익잉여금의 구분**

- ①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금전에 의한 배당에 최소 10% 의무적립)
- ② 임의적립금 : 사업확장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 등..
- ③ 미처분이익잉여금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반영한 후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계산서로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상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에 공시

☞ 이익잉여금 처분유형 : 배당(현금배당, 주식배당), 적립, 자본조정(-)항목과 상각

16 복합금융상품**① 복합금융상품의 유형**

- ① 복합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요소와 지분상품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임
- ② 전환사채(CB) : 투자자는 사채권자로 보유기간 중 이자를 수령하다 전환권 행사시 주주로 전환됨
- ③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사채권자는 만기까지 존속 + 행사가 만큼의 주금을 추가로 납입시 주주가 됨

② 전환사채**(1) 전환사채의 발행 :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인식**

- ① 부채요소 = 미래 현금흐름을 발행시점의 유사한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상환할증금도 포함)
- ② **자본요소(전환권대가)** = 발행금액 - 발행시점의 부채요소

(2) 전환사채의 후속측정

- ① 부채요소(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② 자본요소(전환권대가) : 후속측정 없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선택사항)

(3) 전환사채의 전환 : 부채요소는 감소하고 자본은 증가

- ① 전환사채 전환시 증가하는 자본 = 감소하는 부채금액
- ② **전환사채 전환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 ① - 자본금 + 전환권대가 대체액**
(**전환사채 전환시 발행되는 주식수 = 액면금액(일부 행사시 행사비율을 곱한 금액) ÷ 전환가격**)
- ③ 전환사채 전환 후 이자비용 = 부채의 총장부금액 X 남은 부채비율 X 유효이자율

③ 신주인수권부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발행시점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분리하여 인식**

- ① 부채요소 = 미래 현금흐름을 발행시점의 유사한 사채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면 상환할증금도 포함)
- ②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 발행금액 - 발행시점의 부채요소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후속측정

- ① 부채요소 :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회계처리
- ②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 후속측정 없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선택사항)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부채요소는 감소하지 않고, 행사가격만큼 현금을 내고 주식을 취득

- ①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시 증가하는 자본 = 납입하는 현금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 = ① - 자본금 + 신주인수권대가 대체액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행되는 주식수 = 액면금액(일부 행사시 행사비율을 곱한 금액) ÷ 행사가격)
(단,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인 경우 ① + 행사비율의 상환할증금 현재가치 - 자본금 + 신주인수권대가 대체액)
- ③ 신주인수권 행사 후 이자비용 = 부채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부채의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① 수익인식의 5단계

1단계 : 계약식별 -> 2단계 : 수행의무 식별 ->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 4단계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5단계 : 수익인식

② 1단계 : 계약식별

(1) 계약이 식별되기 위한 요건 : 모두충족

- ①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다.
- ②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 ③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 ④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 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

(2) 추가 고려사항

- ① 계약은 서면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구두, 사업관행 등으로 성립할 수 있다.
- ② 계약이 식별되기 전에 대가를 먼저 수령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한다.
- ③ 해당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③ 2단계 : 수행의무 식별

(1) 수행의무란?

- ①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s)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 ② 수행의무가 다수 : 수익도 여러번, 수행의무가 하나 : 수익도 한번 인식
- ③ 수행의무는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한정하지 않음. 구두, 사업관행 등에 따라 수행의무가 식별될 수도 있음
- ④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예:계약준비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관리업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구별되는 수행의무 별로 각각 수익 인식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기 위해서는 재화, 용역 그 자체로도 구별되어야 하며, 계약내에서도 구별되어야 함

(3) 구별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별 X, 단일수행의무

- ① 기업은 고객이 특정한 결합산출물(들)을 생산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투입물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사용
- ② 재화나 용역을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
- ③ 해당 재화나 용역은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

④ 3단계 :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 부가가치세)은 제외.

거래가격은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음

(1) 변동대가

- ①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거래가격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거래가격을 추정
- ② 거래가격은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할인, 장려금,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가능
- ③ 변동대가는 기댓값(금액과 확률이 다수)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선택가능한 대안이 두 개일 때)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일부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 ① 거래가격 산정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 판매가격)으로 수익 인식. 이때 **고객의 신용 특성을 반영한 이자율을 사용하며, 계약 개시 후에는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음**
- ②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조정하지 않은 실무적 간편법 사용 가능
- ③ 단, 다음의 경우는 고객과의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으므로 현재까지 하지 않음

- ㉠ 고객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선급하였고, 그 재화나 용역의 이전 시점은 고객의 재량에 따른다.
- ㉡ 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 약속한 대가와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가격 간의 차이가 고객이나 기업에 대한 금융제공 외의 이유로 생기며, 그 금액 차이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

(4) 비현금대가

- ①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비현금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
- ②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 ②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 ③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⑤ 4단계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단일의 수행의무이면 거래가격을 배분하지 않지만, 별개의 수행의무로 식별된 경우 거래가격을 각각의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한다.

(1)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 ① 거래가격은 수행의무의 각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 ②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한다.

- ㉠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 시장에서 고객이 지급하려는 가격 추정
- ㉡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 예상원가에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방법
- ㉢ 잔여접근법 :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

(2) 할인액의 배분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

(3) 거래가격의 후속변동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음.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

⑥ 5단계 : 수익 인식

- ※ 수행의무 이행 ○ → 수익 인식 ○
- ※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수 있으면 수행의무를 이행한 것임

(1) 기간에 걸쳐 이전 : 진행기준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재공품)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2) 한 시점에 이전 : 기간에 걸쳐 이전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 시점에 이전하는 것임

-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⑦ 기타 고려사항

(1) 계약체결증분원가

- ①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
- ② 계약체결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

(2) 보증

- ① **확신 유형의 보증**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는 보증으로 수행의무가 아니며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 ② **용역 유형의 보증**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유형의 보증으로 수행의무에 해당하며 해당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

(3) 재매입약정

- ①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
- ② 재매입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 ③ 선도나 콜옵션

재매입가격 > 원래의 판매가격 : 금융약정

재매입가격 < 원래의 판매가격 : 리스

④ 풋옵션

구분		회계처리
재매입가격 > 원래 판매가격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금융약정
	재매입가격 ≤ 예상 시장가치 & 권리 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
재매입가격 < 원래 판매가격	권리 행사가 유의적 O	리스
	권리 행사가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

18 | 건설계약**① 진행기준**

- ① 진행기준은 산출법 또는 투입법 중 선택 가능
- ② 투입법 :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소비한 자원,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에 기초하여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
- ③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하고 진행률을 산정한다.

② 발생원가 투입법 진행률(누적진행률)

(누적)진행률 = 당기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계약원가(누적발생원가 + 추가소요원가)

③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 공사손익

- ① 당기 공사(계약)수익 = 계약금액 × 당기 진행률
 - ② 당기 공사(계약)원가 = 추정총공사(계약)원가 × 당기 진행률
 - ③ 당기 공사손익 = (계약금액 - 추정총공사원가) × 당기 진행률
- 누적진행률을 사용하므로 공사가 진행된 두 번째 연도인 경우 첫해의 공사손익을 차감하여야 한다.

④ 재무상태표 표시

- ① 미성공사(=유동자산) = 계약금액 × 누적진행률
- ② 미청구공사(=계약자산) =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 ③ 초과청구공사(=계약부채) = 진행청구액 - 미성공사

⑤ 손실예상공사(계약금액 < 추정총공사원가)

- ① 손실예상공사로 확인되는 경우 예상손실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② 예상손실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면 손실예상공사로 확인되는 연도에 총손실이 귀속된다.
- ③ 손실예상공사로 확인되는 경우의 공사(계약)손실
= 총손실(계약금액 - 추정총공사원가) + 전기 이익인식액

19 종업원급여**① 종업원급여의 네가지 범주****(1) 단기종업원급여**

- ①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급여
- ② 모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급여 전부나 일부의 지급기일이 종업원의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종업원급여

(3) 해고급여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기업의 결정 또는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의 결과로 지급되는 종업원 급여

(4) 퇴직급여**② 퇴직급여****(1) 확정기여제도(DC형)**

- ①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
- ②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
- ③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이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2) 확정급여제도(DB형)

- ①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임
- ②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기업이 부담**
- ③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간의 관계에 대해 주석에 공시할 사항이 많으며, 보험계리인의 참여가 요구됨

③ 확정급여제도**(1) 확정급여채무(부채)**

- ① 확정급여채무는 미래 퇴직시점의 예상 퇴직금액을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할인한 금액
- ②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총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 시장수익률 사용**
- ③ 당기근무원가란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급여의 현재가치임
- ④ 과거근무원가란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을 말하며 + 또는 -의 금액이 될 수 있음
- ⑤ 확정급여채무 기말장부금액 = 기초잔액 + 이자비용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퇴직금 지급액

⑥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

보고기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 보험수리적손실(기타포괄손익 -)

보고기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 :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 +)

(2) 사외적립자산

- ① 사외적립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 ② 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 = 기초잔액 + 이자수익(기대수익) + 출연 - 퇴직금지급액

③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요소 : 기타포괄손익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 +)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사외적립자산 장부금액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 -)

(3) 재무상태표 표시

- ① 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기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
 - ② 기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순확정급여자산
- (단, 순확정급여자산 금액은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순확정급여자산 금액이 자산인식상한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금액도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함)

(4) 재측정요소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후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는 금지된다.
단, 자본 내에서 다른 자본항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21 법인세**① 당기법인세부채, 당기법인세자산****(1) 당기법인세부채**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당기법인세부채 등)로 인식

(2) 당기법인세자산

과거 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자산(당기법인세자산 등)으로 인식

②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1) 가산할 일시적차이**

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②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사례 : 미수이자, FVPL금융자산평가이익 등..

(2) 차감할 일시적차이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②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사례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FVPL금융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측정 ★

①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누진세율 하에서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②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음

③ 매 보고기간 말에 미래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하고, 이후 그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 환입

④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재검토

③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하는 법인세효과 : 법인세비용에는 영향이 없음

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직접 조정함

②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

- 자기주식처분손익(자본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주식처분손익에서 직접 조정

④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1) 유동/비유동 구분표시**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를 유동/비유동 구분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유동항목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 기타고려사항

①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② 매 보고기간 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재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3) 상계표시

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표시

㉠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 기업이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다.

②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표시

㉠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다.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4) 법인세비용의 표시

① 정상활동 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② 중단영업과 관련된 손익은 관련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후의 순액으로 별도 표시

③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한 법인세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공시

22 주당이익(EPS)

① 주당이익 : 보통주 1주당 귀속이익을 나타내는 지표

- ① 주가수익배율(PER) = 주가/EPS(주당이익)
- ② 배당성향 = 1주당 배당금/EPS(주당이익)
- ③ 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구분하며, 포괄손익계산서 하단에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주당이익은 부(-)의 경우에도 표시한다.

② 기본주당이익

$$\text{기본주당이익} = \frac{\text{보통주귀속이익(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text{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 분자 고려사항

①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 누적적우선주 :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계기간과 관련한 배당금을 차감

(예: 20X3년도 ₩300 배당결의, 단, ₩200은 전기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지급인 경우
당기순이익에서는 20X3년도 귀속분인 ₩100만 차감)

㉡ 비누적적우선주 : 해당 회계기간에 관련하여 배당결의된 배당금만 차감

② 전환우선주 조기전환 유도 : 전환우선주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의 전환조건에 따라 발행될 보통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통주나 그 밖의 대가의 공정가치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보고 차감

(2) 분모 고려사항

① 유통보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자기주식수

② 시가로 발행한 유상증자 :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부터 가중평균

③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

㉠ 공정가치 발행 유상증자 주식수 = (발행주식수 X 발행금액) ÷ 공정가치

㉡ 무상증자 요소 = 총발행주식수 - ㉠

(※ 무상증자 주식수는 기초유통보통주식수와 공정가치로 발행한 유상증자 주식수의 비율로 배분)

④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재발행) :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시점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차감하며, 자기주식을 처분(재발행)하면 처분시점부터 유통주식수에 가산

⑤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 : 계약체결시점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

⑥ 자원의 실질적인 변동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유통보통주식수가 변동되는 경우

(예: 무상증자, 자본전입, 주식분할, 주식병합,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를 통한 무상증자요소 등) : 비교표시되는 최초기간의 개시일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소급수정)

⑦ 조건부발행보통주 :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보통주식수에 포함

㉓ 희석주당이익

※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을 낮추는 즉, 희석효과가 있는 것만 고려한다.

$$\text{희석주당이익} = \frac{\text{보통주귀속이익(당기순이익 - 우선주배당금) \pm 조정금액}}{\text{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pm 조정주식수}}$$

(1) 전환우선주

① 분자 고려사항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분자 금액에 세후우선주배당금을 가산

② 분모고려사항

기초부터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를 가산.

단, 전환우선주가 당기 중 발행된 경우 발행된 시점부터 조정주식수에 포함한다.

(예: 전기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500주(전환비율 1:1) → 500주 X 12/12

당기 4/1일에 발행한 전환우선주 500주(전환비율 1:1) → 500주 X 9/12)

(2) 전환사채

① 분자 고려사항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분자 금액에 세후이자비용[이자비용 x (1-법인세율)]을 가산

② 분모고려사항

기초부터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가정한 주식수를 가산.

단, 전환사채가 당기 중 발행된 경우 발행된 시점부터 조정주식수에 포함한다.

(예: 전기에 발행한 전환사채 500주(전환비율 1:1) → 500주 X 12/12

당기 4/1일에 발행한 전환사채 500주(전환비율 1:1) → 500주 X 9/12)

(3) 신주인수권, 옵션

① 분자 고려사항

신주인수권, 옵션 등은 권리행사를 위해 주금납입이 필요하므로 조정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분모고려사항 : 자기주식법

㉠ 조정주식수 = (발행주식수 X 행사가격) ÷ 평균시장가격

㉡ 전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 등은 기초부터 가중평균하며, 당기 중에 발행된 경우 발행시점부터 가중평균한다.

23 리스

①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1) 최초 측정

(차) 사용권자산	XXX	(대) 리스부채	XXX
-----------	-----	----------	-----

(2)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① 리스부채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로

- ㉠ 고정리스료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잔존가치보중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는 데 드는 위약금

②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

③ 리스부채 산출시 적용하는 이자율

- ㉠ 내재이자율
- ㉡ 단,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3)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 ①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한다.
- ② 사용권자산의 원가 구성항목

- ㉠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리스 기초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4) 리스부채의 후속측정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조정
 (리스부채 감소액 = 지급한 리스료 - 리스부채 기초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5)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

1) 원가모형 : 일반적으로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으로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원가모형은 매 보고기간 말 감가상각비(상각비)만 반영하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① 사용권자산의 상각기간

구분	내용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상각
그 밖의 경우(예: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상각

② 사용권자산의 손상 :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을 적용한다.

2) 재평가모형 및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 ①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 방법으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용권자산이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후속측정할 수 있다.

(6)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사용권자산의 인식면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리스 2. 소액 기초자산 리스 |
|--|

1) 단기리스

- ① 리스개시일 기준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매수선택권 있는 리스는 제외)
- ② 단기리스는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

2) 소액 기초자산 리스

- ① 소액인지 여부는 리스대상 자산의 연식에 관계없이 새 것의 가치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를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
- ②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의 선택은 리스별로 적용

3)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단기리스 및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해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면,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

(7) 리스변경

- ① 리스변경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 ㉠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 ㉡ 넓어진 리스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 ②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수정리스료를 산정하고 수정할인율로 리스부채를 재측정한다.
- ③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되는 비율만큼 감액하고,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1) 리스의 분류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의 분류는 리스제공자에게만 적용하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 운용리스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지 않다.)

1)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사례

-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④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 ⑤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2) 리스분류의 결정일

리스는 리스약정일에 분류되며,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한다. 추정의 변경이나 상황의 변화는 리스를 새로 분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회계처리 : 리스채권 -> 이자수익(유효이자율법)

1) 리스채권의 최초측정 = 리스순투자 = 리스총투자의 현재가치한 금액(할인율 : 내재이자율)

※ 리스이용자는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내재이자율을 리스제공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채권 산출시 내재이자율로만 할인합니다.

- ①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의 리스순투자
= 정기리스료의 현재가치 + 매수선택권의 현재가치
- ②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의 리스순투자
= 정기리스료의 현재가치 + 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은미쌤의 빈출유형 체크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을 위해 투자한 금액(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을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고자 합니다. 단, 리스제공자도 영리기업이니 원금만 회수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은 결국 원금 + 이자수익(내재이자율)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재이자율을 문제에서 제시하면 아래의 식에 따라 정기리스료(고정적으로 수취하는 리스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PV(정기리스료) + PV(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②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PV(정기리스료) + PV(보증잔존가치) + PV(무보증잔존가치)

2) 리스채권의 후속측정

- ① 연도 말 이자수익 = 리스채권의 기초장부금액 X 내재이자율
- ② 리스채권에 무보증잔존가치가 포함된 경우 무보증잔존가치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정치가 줄어든 경우 리스채권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3)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 : 금융리스에 비해 회계처리가 단순

- ① **리스료수익(당기수익)** :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
- ② **리스개설직접원가(당기비용)** :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 ③ **감가상각비(당기비용)** :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다른 비슷한 자산의 보통 감가상각 정책과 일치

(4) 판매형리스(리스제공자 = 제조자)

판매형리스는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일때만 매출액을 인식할 수 있다.

- ① 매출액 = \min [자산의 공정가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리스료의 현재가치]
(※ 판매형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매출액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해 내재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함에 유의)
- ② 매출원가 = 기초자산의 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③ **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원가는 매출이익을 인식할 때 비용 인식**
- ④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자산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음

24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①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구분

(1) 회계변경

기업회계기준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경제환경의 변화, 기술 및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을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오류수정이 아니다.

(2) 오류수정

오류는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말한다. 오류는 이전에 사용한 방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

(1)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회계정보는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2) 일관된 회계정책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 적용을 규정 또는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3)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 둘 중 하나

-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② 회계정책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사례 : 이건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을께~

- 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 ②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5) 회계정책 변경의 사례

- ① **재고자산 단가결정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 ★**
- ② 투자부동산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
- ③ 표시통화의 변경
- ④ 현금흐름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 결정 정책의 변경
- ⑤ 유/무형자산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최초적용 제외)

(6) 소급적용 : 원칙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금액과 비교 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

(7) 소급적용의 예외

- ①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당기일 수 있음)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 조정
- ②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 재작성

(8) 기타 고려사항

- ①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
- ②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 ★

③ 회계추정의 변경(회계추정치의 변경) : 전진적용**(1)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사유**

- ①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이나 상황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추정치가 바뀌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 ②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정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은 필요할 수 있다.
- ③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2) 전진적용

그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3)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

-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②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비한정에서 한정으로 변경
- ③ 매출채권의 대손예상률의 변경
- ④ 제품보증충당부채의 추정치 변경
- ⑤ 정부보조금의 사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

④ 오류수정**(1) 오류의 구분**

오류는 어떠한 항목이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초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오류와 그렇지 않은 오류로 구분한다.

(2) 중요한 오류 : 소급수정

- ①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이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
- ②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
- ③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아니한다. ★

(3) 소급수정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설명한 소급수정과 동일

(4) 자동조정오류

한 회계기간에 발생한 오류가 다음 회계기간에는 반대의 형태로 나타나 자동적으로 상쇄됨으로써 수정되는 오류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비용의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 ㉡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 ㉢ 선급비용, 선수수익의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 |
|--|

☞ 20x1년도 재고자산의 오류를 20x3년 회계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미 해당 오류는 20x2년 말 마감시 자동 조정되었으므로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비자동조정오류

자동조정오류 외에는 모두 비자동조정오류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유·무형자산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회계처리 오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 현금흐름표**① 현금흐름표의 구성**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영업활동현금흐름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

- ①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 ②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 ③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 ④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 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 ⑤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
- ⑥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2) 투자활동현금흐름

- 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입 또는 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
-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입 또는 유출
- ③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 ④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입 또는 유출(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입 또는 유출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

(3) 재무활동 현금흐름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①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유상증자)
- ②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자기주식)
- ③ 담보, 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 ④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 ⑤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4) 이자, 배당금 및 법인세 : 별도로 공시

→ 무조건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 법인세지급에 따른 현금흐름은 별도로 공시한다.

- ① 이자수입(이자로 인한 현금유입액) :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 ② 이자지급(이자로 인한 현금유출액) :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
- ③ 배당금의 수취(배당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일반적으로는 영업활동 또는 투자활동
- ④ 배당금의 지급(배당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일반적으로는 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
- ⑤ 법인세 지급(법인세로 인한 현금유출액) :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

② 영업활동현금흐름 : 간접법 또는 직접법**(1) 영업활동현금흐름의 표시방법**

- ① **간접법**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세부적인 활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계산
(※ 문제에서 당기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제시되어 있으면 간접법)
- ② **직접법** : 간접법과는 달리 각 활동별로 현금흐름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
(※ 질문이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액,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액과 같이 현금흐름이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질문함)
- ③ **직접법 권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직접법 사용을 권장함(의무사항은 아님)

(2)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과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①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은 이자, 법인세, 배당금으로 인한 현금유출입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배당금수익을 제거하며, 재무상태표 계정의 증감에서도 이자, 법인세, 배당금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증감을 반영하지 않음
- ②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 현금흐름임

③ 투자활동, 재무활동현금흐름 : 총액표시**(1) 총액표시**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총현금유입과 총현금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외 : 순액표시

단, 다음의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보고할 수 있다.

- ① 현금흐름이 기업의 활동이 아닌 고객의 활동을 반영하는 경우로서 고객을 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 ② 회전율이 높고 금액이 크며 만기가 짧은 항목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3) 기타 고려사항

- ①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달리 직접법, 간접법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 ②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하더라도 투자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현금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26 재무제표 분석**① 유동성비율**

(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2) 당좌비율 = 당좌자산/유동부채

(3) 재고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비율 관련 문제에서 빈출되는 유형은 특정 회계처리 이후 비율의 변화 관련한 부분이다.

기존의 비율이 1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의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증감하여도 작은금액의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분자, 분모 중 어느 금액이 더 작은금액인지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정성비율 :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파악하는 비율

(1) 부채비율 = 총부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자기자본

(2) 이자보상비율 = 이자비용 및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이자비용

※ 이자보상비율은 높을수록 안전

③ 수익성비율 : ~이익률의 ~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모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2) 자기자본이익률(ROE)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매출액순이익률 X 총자산회전율 X (1 + 부채비율)

④ 활동성비율

(1)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일 ÷ 매출채권회전율

(3) 재고자산 회전율 =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

(4) 재고자산회수기간 = 365일 ÷ 재고자산회전율

(5) 정상영업주기 = (2) + (4)

⑤ 기타의 재무비율

(1) 주가수익배율(PER) = 주가/주당이익(EPS)

(2) 배당성향 = 1주당 배당금/주당이익(EPS)

(3) 배당수익률 = 1주당 배당금/주가

27 보고기간 후 사건

①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 ①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주주총회날이 아님)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 ②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구분

②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 사건

- ①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현재의무가 보고기간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②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나 이미 손상 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금액의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는 경우
- ③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 ④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의무나 의제의무가 있는 이익분배나 상여금지급 금액을 보고기간 후에 확정하는 경우
- ⑤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③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시장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중 주식 공시사항 : 4, 5, 9번 정도만 암기

- ①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 사업결합 또는 주요 종속기업의 처분
- ② 영업 중단 계획의 발표
- ③ 자산의 주요 구입, 자산을 매각예정으로 분류, 자산의 기타 처분, 정부에 의한 주요 자산의 수용
- ④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설비의 파손
- ⑤ 주요한 구조조정계획의 공표나 이행착수
- ⑥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주요한 보통주 거래와 잠재적보통주 거래
- ⑦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자산 가격이나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
- ⑧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나 세율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변경 또는 변경 예고
- ⑨ 유의적인 지급보증 등에 의한 우발부채의 발생이나 유의적인 약정의 체결
- ⑩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관련되어 제기된 주요한 소송의 개시

⑤ 기타 고려사항

- ①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②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음
- ③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 수정(예: 우발부채로 공시한 내용을 추가 증거에 기초하여 수정)

28 환율변동효과**① 통화의 종류****(1) 기능통화**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통화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음

(2) 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예: 원화가 기능통화라면 달러, 유로, 엔화 모두 외화임)

(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통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 가능

②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1) 화폐성항목 :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

(예: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등..)

(2) 비화폐성항목 : 화폐성항목 외의 항목

(예: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등..)

③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1) 화폐성항목**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

② **화폐성 외화자산(외화부채)은 매 보고기간 말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이때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2) 비화폐성항목

① **역사적원가로 후속측정하는 경우**

㉠ **최초측정**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

㉡ **후속측정** : 역사적원가로 후속측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외화환산손익은 발생하지 않음

②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 **최초측정**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

㉡ **후속측정** : **공정가치 결정일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외환차이**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손익**① 매각예정비유동자산****(1) 정의**

- ①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비유동자산 중 장부금액이 **사용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될 것으로 예상**
- ② 사용목적 비유동자산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면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함**.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예정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함
- ③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보고기간 후에 충족된 경우 당해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발행되는 당해 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음
- ④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원칙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회수되기 때문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음

(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표시와 측정

- 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 ②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인식
→ 장부금액 > 순공정가치 : 손상차손 인식
- ③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비와 지분법 인식을 중지**한다.
- ④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예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누계액도 별도로 표시
- ⑤ 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해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아니함**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대한 매각계획의 변경과 철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이나 손상환입으로 인식

→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소급하여 수정

② 중단영업손익**(1) 정의**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또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2) 중단영업의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 ① 중단영업에서 발생한 **세후중단영업손익**
- ②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처분함에 따른 **세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
→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달리 중단영업손익의 경우 관련된 공시사항이 충분히 표시될 수 있도록 비교목적의 과거재무제표에 중단영업손익을 다시 표시함